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

의안 번호	2018~74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 : 2018. 10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2019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·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근거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 152조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- 대 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(대표 정성훈)
- 사 업 비 : 4,012천원
-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

사업기간	2018년 예산액	2019년 요구액*	재 원 별				
			계	지 특	도 비	군 비	기 타
2019년	3,700	4,012	4,012			4,012	

- 사업내용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-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나. 부서의견

-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네트워크포럼 운영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
-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,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
-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.

3. 관련법규 및 조례
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,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 1
- 출연기관 현황 : 붙임 2
- 기타 참고자료(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) : 붙임 3

관 계 법 령

지방세기본법

[시행 2018.1.1.] [법률 제15291호, 2017.12.26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지방세정책과), 02-2100-3597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18.1.1.] [대통령령 제28523호, 2017.12.29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지방세정책과), 02-2100-3597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5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 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 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 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 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18.3.27.] [법률 제15309호, 2017.12.26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재정정책과), 02-2100-3506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

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7.16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【 출연기관 현황 】

한국지방세연구원

설립근거	법 률 : 지방세기본법151조			전화번호 : 02-2071-2798			
	시행령 : 조 례 :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		
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,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	출연	
인원현황 (2018년 5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	비정규직	
	60명 (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, 과견인력 제외)		36명 (10명) *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과견되거나 당연직 (지자체임원 등)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() 로 표시) ※ 예 : 12명 (4명)			24명 (기간제,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)	
임 원 (2018년 5월 현원기준)	직 책 (직책명)	성 명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	임 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
	이 사 장	허 ○ ○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	2017.12. 22. ~ 2020.12. 21.	
	부이사장	이 ○ ○	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(권한대행)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원 장	정 ○ ○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	2018. 1. 17. ~ 2021. 1. 16.	
	이 사	최 ○	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			당 연 직	
	이 사	하 ○ ○	서울특별시 재무국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이 ○ ○	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이 ○ ○	충청북도 행정국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고 ○ ○	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김 ○ ○	강원 강릉시 부시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박 ○ ○	인천 옹진군 부군수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강 ○ ○	광주 북구청 부구청장			2018. 2. 28. ~ 2019. 2. 27.	
	이 사	손 ○ ○	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		2017. 2. 28. ~ 2019. 2. 27.	
	감 사	김 ○ ○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	당 연 직	
감 사	장 ○ ○	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			2018. 2. 28. ~ 2020. 2. 27.		
주요기능	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	
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
					45,809 (설립이후 2017년까지 지 자체가 출자·출연한 금 액)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6	2017	2018	재무현황 (백만원) '17.12.31기준	자산	23,795 (자산 총액)
	예산액	8,406	9,986	13,313		부채	12,626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	8,276	9,551	12,102		자본	11,168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7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10,572			8,027		2,545	



경 상 남 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

1.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3046호(2018. 8. 01.)와 관련됩니다.
2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「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」을 통보하오니,
3. 각 시·군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, 통보, 정산 등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, 아울러 붙임 출연금 산정서식에 따라 **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하여 '18. 8. 8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- 붙임 1.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1부.
2. 2019년도 출연금 집계표 1부. 끝.

경 상 남 도 지 사

수신자 전 시군 세무부서장

주무관	세정담당	대결 2018. 8. 2.	세정과장	전결
협조자				
시행	세정과-8142	(2018. 8. 2.)	접수	재무과-18822 (2018. 8. 2.)
우 51154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경상남도청 (사립 / 동) / http://gyeongnam.go.kr			
전화번호	055-211-3716	팩스번호	055-211-3719	/ kmj2063@korea.kr / 비공개(5)

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,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